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매 장 유 산 보 호 및 조 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2.13. 공포, 2025.2.14. 시행)에 맞추어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5호, 2024.2.13. 공포, 2025.2.14.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의 매장·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대상과 절차를 삭제하는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이관된 건설공사 시행자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사항 정비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관된 사항 삭제 및 정비

○ 현행 건설공사 시행자가 제출하는 “지표조사 보고서”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보고서”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영향진단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관리(안 제3조제1항제2호)

-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절차,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5조·제6조 삭제)
- 지자체 위임사항 정비(안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 지표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공사 시행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6 개정)

나. 국가유산 매장·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지자체가 실시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에 대한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마련

- 국가·지자체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검토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제5조의4)
-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유존지역 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마련
(안 제7조)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영향진단을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영향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2년 이내 업
무정지하거나 등록취소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세부기
준 마련 (안 별표2, 별표4, 별표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2 중 “지표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지표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로, “지표조사 결과”를 “지표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조제2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으로, “지표조사”를 “영향진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조사지역의 유물·유구 산포지(散布地),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조사를 수행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사기관에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책임조사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지표조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유존지역으로 보호해야 하는 경우, 개발사업 계획·시행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매장 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II 위반행위란 제3호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을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II에 제9호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1년 2년
10.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의 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정지 중인 경우	법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제8호	1년 2년

별표 4 II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8호	•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
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8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별표 5 II 위반행위란 제3호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을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로 한다.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삭 제>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존지역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은 이 영에 따른 “영향진단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u>지표조사의 결과 보고서</u> 중 이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u>지표조사 결과</u>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1의2. ----- ----- -- <u>지표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u> (이하 “ <u>지표조사 보고서</u> ”라 한다) ----- ----- -- <u>지표조사</u> -----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u>지표조사 보고서</u> 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 -----영향진단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제4조(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
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
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
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
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
공사를 포함한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로서 사업 면적(매장유산 유
존지역과 제6항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
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
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
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
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
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

사업 등) <삭 제>

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
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
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
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
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
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
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

명 이상이 국가유산이 매
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
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
역. 이 경우 기관에 소속
되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
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
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라. 삭제

마. 삭제

② 제1항제4호나목2)에 따른 매
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
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

<삭 제>

라 한다)에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책임조사원을 보
조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
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
사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제3조제1항제1호 또
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
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
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
양유산연구소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
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이
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이하 “시·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해당 건설공사가 지표조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삭 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땅깍기나 땅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땅을 다시 메운 지역으로서 다시 메우기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대나무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솜아베기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삭제>

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 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땅과 기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삭 제>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의 의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
하여 매장유산 및 그 주변 경
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④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
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
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
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

<삭 제>

<삭 제>

<삭 제>

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
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
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
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
한 법인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
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5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
사의 방법 및 절차) ①·② (생
략)

③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사를 마친 날부
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5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
사의 방법 및 절차)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절
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등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
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
헌조사 내용

2. 조사지역의 유물·유구 산포
지(散布地), 민속, 고건축물
(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
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
장조사 내용

3. 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의
의견

⑤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
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
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결과 보
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신 설>

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조사지역의 유물·유구 산포지(散布地),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조사를 수행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사기관에서 법 제12조제1

항에 따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책임조사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전문위원

이거나 이었던 사람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전문위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지표조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

제6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법 제8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흙쌓기 또는 지하 땅파기를
수반하는 사업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내수면 또는 「연
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
반하는 사업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2
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
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
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
여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삭 제>

<삭 제>

<삭 제>

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이하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라 한다)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유존지역으로 보호해야 하는 경우, 개발사업 계획·시행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매장유

1. ~ 4. (생략)

5. 매장유산 발견 시 신고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명령에 대하여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해야 한다.

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3명

<삭 제>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2. 제3항에 따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7일

⑤ (생략)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 및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가. 법 제6조의2 및 이 영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나. 가목 외의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3. (생략)

② ~ ④ (생략)

--.

<삭 제>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연 락 처	(042) 481 - 3131